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41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황 희·어기구·이용선

한민수 · 안규백 · 이기헌

차지호 • 이학영 • 문대림

이연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·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,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·건폐율 등 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 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,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,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, 제40조의7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제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0조의7(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) ①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"체육시설"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를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.
 - ④ 그 밖에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도시·군관리계획"이란 특	4
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	
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	
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	
수립하는 토지 이용, 교통, 환	
경, 경관, 안전, 산업, 정보통	
신, 보건, 복지, 안보, 문화 등	
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	
말한다.	
가. ~ 자. (생 략)	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차.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
	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
	<u>한 계획</u>
5. ~ 20. (생 략)	5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0조의7(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
	구역의 지정) ① 도시·군관리
	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
	내 공공체육시설(「체육시설의
	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
	조제1호의"체육시설"중 국가

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효율 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하 여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를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 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.
 ④ 그 밖에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・변경 등에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